



## 지주회사 공정경제 3법의 이해

1. 정부에서 발의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논란 확대
2. 정부 및 여당의 처리의지 강해 9월 국회 통과 가능성 확대
3. 법안 통과 시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클 전망

지주·통신. 최관순, 3773-8812



Analyst

최관순

ks1.choi@sksecurities.co.kr  
02-3773-8812

## 지주회사

### 공정경제 3 법의 이해

국회에서 입법한 **공정경제 3 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9월 개원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정부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처리 의지가 강하기 때문. **공정경제 3 법 통과 시 지주회사 전환 요건 강화, 사익편취 규제 강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등 대기업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21 대 국회에서 공정경제 3 법 처리 가능성 확대

지난 9월 1일 21 대 국회가 개원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나 공정경제 3 법에 대한 처리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 **공정경제 3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의미하며 현 정부에서 입법했다. 정부 처리 의지가 강하고, 여당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번에 상정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40년만의 전면 개정안**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12 가지로 분류되는데** 1)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2)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3)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준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7)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8)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9)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10)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 11) 전속고발제 개편, 12) 형벌규정 정비이다.

#### 상법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출제를 큰 틀로 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위원에 대한 대주주 등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둘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하여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 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복합금융그룹인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에 적용될 전망이다.

# Content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
2. 상법	30
3.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37

## Compliance Notice

- 작성자(최관순)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0년 9월 21일 기준)

매수	84.09%	중립	15.91%	매도	0%
----	--------	----	--------	----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1980년 처음 제정되었다. 이후 몇 차례 일부 개정되었지만, 전면 개정은 40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다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상법, 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한 21대 정기국회를 통해 통과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76석을 확보한 여당에서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대체로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개정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언론 인터뷰(조선비즈, 2020.09.14)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고, 경성담합(硬性談合)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기업결합심사제도를 개선하고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여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법체계 및 구조의 재정비를 통하여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21세기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제의 전면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12 가지로 구분된다. 1)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2)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3)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7)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8)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9)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10)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 11) 전속고발제 개편, 12) 협별규정 정비이다.

## (1)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회사(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 억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한다. 하지만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장래 시장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는 등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안 제 11 조제 2 항)

-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2) 지주회사의 자회사 ·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상장사: 20%, 비상장사: 40%)이 높지 않아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규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상장사: 30%, 비상장사: 50%)시킨다는 내용이다.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지만,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신규로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상향된 지분율을 적용받게 된다.

2019년 9월 현재 국내 지주회사는 총 173개사가 있다. 이 중 금융보험 지주회사는 10개사이며, 일반지주회사는 163개사이다. 국내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2020년 5월 기준 34개 집단이 있는데 이 중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신세계, 케이티, 두산,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에쓰-오일, 현대백화점, 카카오, 교보생명보험, 영풍, 대우조선해양, 케이티엔지, 케이씨씨, 대우건설 등이 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 시 강화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 지주회사 대비 지주회사 전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삼성, 현대차 등 비지주체제 대기업군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 지주회사 현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 2019년 9월 현재 기준

## 기업집단 현황

공개년월	지정수	자산별 구분	
2020.05	64	상호출자제한집단(34)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농협, 신세계, 케이티, 씨제이, 한진, 두산, 엘에스, 부영,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에쓰-오일, 현대백화점, 카카오,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효성, 하림, 영풍, 대우조선해양, 케이티엔지,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코오롱, 대우건설
		공시대상기업집단(30)	오씨아이, 이랜드, 태영, SM, DB, 세아, 네이버, 네슨, 한국타이어, 호반건설, 셀트리온, 종흥건설, 넷마블, 아모레퍼시픽, 태광, 동원, 한라, 삼천리,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IMM인베스트먼트, 한국지엠, 동국제강, 다우키움, 금호석유화학, 애경, 하이트진로, 유진, KG, 삼양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지주회사가 30% 미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지주회사는 추가적인 자회사에 대한 지분 확보의무가 없다. 따라서 추가적인 지분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다만 개정의 취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대라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므로 세법상의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인 지분확대를 유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지주회사 보유 지분율 30% 미만인 상장자회사		(단위: %)
지주회사명	자회사 지분율	자회사명
한솔홀딩스(주)	20.04	한솔테크닉스(주)
(주)셀트리온홀딩스	20.06	(주)셀트리온
(주)효성	20.20	효성화학(주)
(주)골프존뉴딘홀딩스	20.28	(주)골프존
(주)효성	20.30	효성티앤씨(주)
(주)코오롱	20.35	코오롱생명과학(주)
(주)원익홀딩스	21.00	(주)원익큐엔씨
(주)효성	21.20	효성첨단소재(주)
한솔홀딩스(주)	21.37	한솔로지스틱스(주)
(주)종근당홀딩스	21.96	(주)종근당
(주)한진칼	22.19	(주)한진
한솔홀딩스(주)	22.21	한솔인티큐브(주)
(주)이수	22.78	(주)이수페타시스
동아쏘시오흘딩스(주)	22.81	동아에스티(주)
롯데지주(주)	23.08	롯데푸드(주)
롯데지주(주)	23.24	롯데케미칼(주)
한솔홀딩스(주)	23.32	(주)한솔홈데코
주식회사 웅진	24.33	(주)웅진씽크빅
(주)게임빌	24.48	(주)컴투스
(주)엘지	24.69	(주)엘지상사
(주)이녹스	24.90	(주)이녹스첨단소재
롯데지주(주)	24.94	롯데칠성음료(주)
에이피에스홀딩스(주)	25.00	에이피시스템(주)
제이더블유홀딩스 주식회사	25.26	제이더블유신약 주식회사
일동홀딩스(주)	25.56	일동제약(주)
(주)슈프리마에이치큐	25.85	(주)슈프리마
에이피에스홀딩스(주)	26.23	(주)디이엔티
코스맥스비티아이(주)	26.24	코스맥스(주)
에스케이(주)	26.60	(주)에스엠코어
에스케이(주)	26.78	에스케이텔레콤(주)
(주)휴맥스홀딩스	27.14	(주)알티캐스트
미원홀딩스(주)	27.19	주식회사동남합성
주식회사 디앤비컴퍼니	27.73	대한제분(주)
한국콜마홀딩스(주)	27.79	한국콜마주식회사
(주)네오위즈홀딩스	29.37	(주)네오위즈
(주)한진칼	29.62	(주)대한항공
(주)코오롱	29.83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SK 증권

주: 지분율은 2019년 9월 기준

자회사 보유 지분율 30% 미만인 상장 손자회사 (단위: %)

지주회사명	자회사 지분율	자회사명	손자회사 지분율	손자회사명
(주)효성	20.2	효성화학(주)	15.3	신화인터텍(주)
에스케이(주)	26.78	에스케이텔레콤(주)	20.1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주)신리홀딩스	40.18	신라교역(주)	20.6	신리섬유(주)
에스케이(주)	26.78	에스케이텔레콤(주)	28.91	(주)나노엔텍
에스케이디스커버리(주)	45.6	에스케이가스(주)	29.3	에스케이디앤디(주)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SK 증권

주. 지분율은 2019년 9월 기준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안 제 18 조제 2 항 및 제 3 항)

-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 · 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 · 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 ·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 퍼센트, 비상장 40 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 퍼센트, 비상장 50 퍼센트)함.

### (3)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한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지주회사 설립 시 통상적인 지분요건(지분 40% 이상의 자회사로 두거나 5% 미만 지분투자 가능)이 그대로 적용되어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설립 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한다. 이로써 지주회사의 벤처지주회사 설립이 활발해져 다양한 부문에 투자가 확대되고 벤처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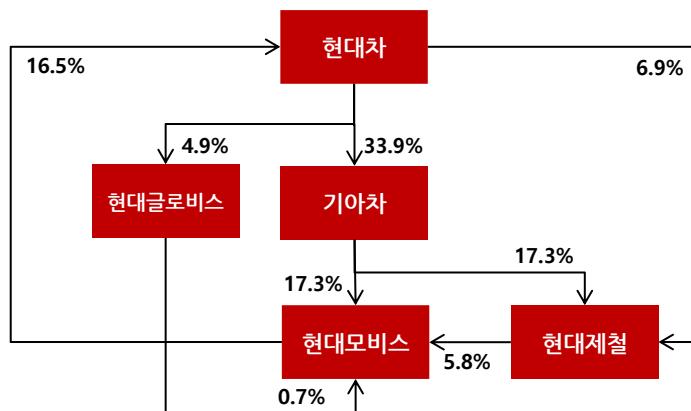
####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안 제 18 조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

-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 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 형성이나 강화가 금지되어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 이전에 존재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문제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신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현대자동차가 4 개의 순환출자 고리(①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차 → 기아차, ②기아차 → 현대제철 → 현대모비스 → 현대차 → 기아차, ③현대차 → 현대글로비스 → 현대모비스 → 현대차, ④현대차 → 현대제철 → 현대모비스 →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 특위를 구성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검토할 당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 제한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수정하여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유지되어 현대차 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유지되나, 정부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순환출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결국 현대차 그룹의 순환출자도 해소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한다. 다만 주가, 업황, 최대주주의 지배력 및 승계 이슈까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 단기간에 순환출자 해소는 어려운 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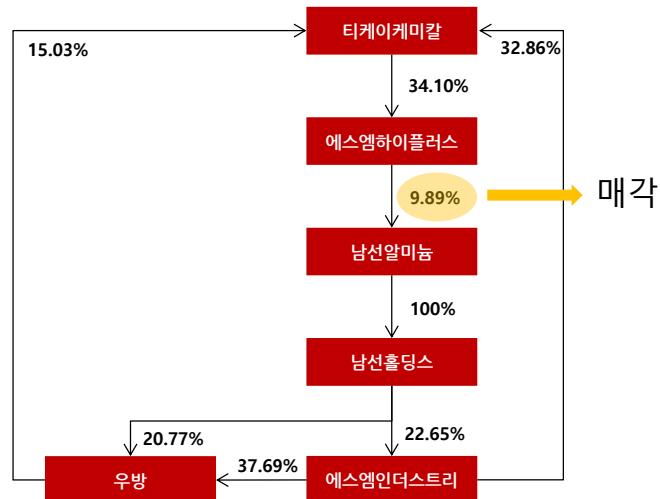
##### 현대차 그룹 순환출자 내용



자료 SK 증권

현대차 이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근접한 SM 그룹(2020년 5월 기준 자산 9.7조원)이 2020년 6월말 기준 3개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0년 7월 13일 에스엠하이플러스가 보유한 남선알미늄 주식 전부를 매각함으로써 현재는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한 상태이다.

### SM 그룹 순환출자 해소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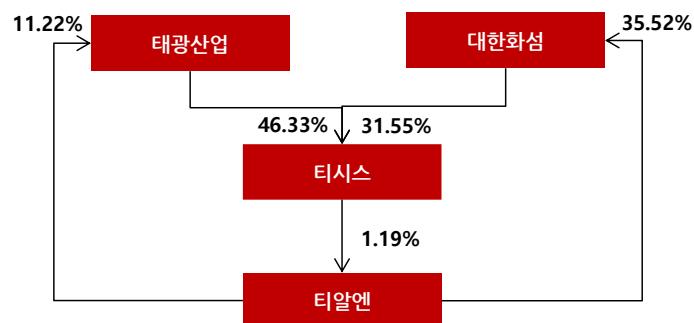


자료: SK 증권

주: 남선알미늄 지분매각에도 최대주주 삼라(18.08% 보유)를 통해 남선알미늄 지배

자산총액 규모 8.1 조원인 태광그룹은 2 개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다. 태광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자산규모 10 조원과 차이가 있어 당분간 순환출자에 따른 의결권 제한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밖에 KG 그룹(자산규모 5.3 조원)도 10 개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가능성 낮아 의결권에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 태광그룹 순환출자 해소내용



자료: SK 증권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안 제 22 조)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①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② 정관변경, ③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이노션의 경우 공익법인의 지분율은 9%인데, 동일인의 지분율(공익법인 제외)은 19.7%이다. 만약 이노션이 계열사와의 합병을 한다면 이미 동일인의 지분율이 15%를 넘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지분율 9%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의 경우에도 공익법인 지분율은 7.6%(자사주 제외 기준 적용)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일인의 지분율(공익법인 제외)은 44.8%로 15%를 초과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계열사와의 합병을 추진한다면 공익법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율이 높지 않고 동일인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이 비교적 높아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요 계열사의 지배력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집단명	공익법인명	피출자회사명	지분율(%)	집단명	공익법인명	피출자회사명	지분율(%)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물산(주)	0.60	포스코	포스코청암재단	(주)포스코	0.03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보험(주)	4.68	포스코	포스코청암재단	(주)포스코엠텍	1.80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에스디아이(주)	0.57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주)엔투비	1.88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전자(주)	0.03	포스코	(학)포스코교육재단	(주)포스코	0.46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증권(주)	0.22	포스코	(학)포항공과대학교	(주)포스코	2.27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화재해상보험(주)	2.87	포스코	(학)포항공과대학교	(주)포스코건설	2.07
삼성	삼성복지재단	삼성물산(주)	0.04	포스코	(학)포항공과대학교	(주)포스코아이씨티	0.87
삼성	삼성복지재단	삼성에스디아이(주)	0.24	포스코	(학)포항공과대학교	(주)포스코인터내셔널	0.30
삼성	삼성복지재단	삼성전자(주)	0.07	포스코	(학)포항공과대학교	(주)포스코케미칼	4.14
삼성	삼성복지재단	삼성화재해상보험(주)	0.34	포스코	(학)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기술투자(주)	5.00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주)미리콤아이엔씨	0.15	한화	학교법인북일학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0.42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물산(주)	1.05	한화	학교법인북일학원	(주)한화	1.40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보험(주)	2.18	한화	학교법인북일학원	한화케미칼(주)	0.15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에스코어(주)	0.14	지에스	(재)남춘재단	지에스건설(주)	1.10
현대자동차	현대차정몽구재단	(주)이노션	9.00	지에스	사회복지법인동행복지재단	(주)지에스	1.59
현대자동차	현대차정몽구재단	현대글로비스(주)	4.46	현대중공업	재단법인아산나눔재단	현대중공업(주)	0.61
에스케이	재단법인최종현학술원	에스케이(주)	0.26	현대중공업	재단법인아산나눔재단	현대건설기계(주)	0.62
에스케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에스케이네트웍스(주)	0.33	현대중공업	재단법인아산나눔재단	현대오일뱅크(주)	0.25
에스케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에스케이건설(주)	0.24	현대중공업	재단법인아산나눔재단	현대일렉트릭엔에너지시스템(주)	0.62
에스케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에스케이디스커버리(주)	0.57	현대중공업	재단법인아산나눔재단	현대중공업자주(주)	0.48
에스케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에스케이씨(주)	0.19	현대중공업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주)아신카카오메디컬데이터	5.00
에스케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에스케이케미칼(주)	0.96	현대중공업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주)현대미포조선	0.43
엘지	엘지연암문화재단	(주)엘지	0.33	현대중공업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중공업(주)	2.38
엘지	엘지연암문화재단	(주)엘지화학	0.03	현대중공업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건설기계(주)	2.41
엘지	엘지연암학원	(주)엘지	2.09	현대중공업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일렉트릭엔에너지시스템(주)	2.41
엘지	엘지연암학원	(주)엘지상사	0.04	현대중공업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중공업자주(주)	1.87
롯데	롯데문화재단	롯데상사(주)	0.38	케이티	(재)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주)케이에이치에스	100.00
롯데	롯데문화재단	롯데쇼핑(주)	0.01	케이티	(재)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주)케이티	0.01
롯데	롯데문화재단	롯데지주(주)	0.10	한진	일우재단	(주)대한항공	0.20
롯데	롯데문화재단	롯데칠성음료(주)	0.10	한진	일우재단	(주)한진칼	0.15
롯데	롯데문화재단	롯데케미칼(주)	0.03	한진	정석물류학술재단	(주)대한항공	0.42
롯데	롯데장학재단	(주)대홍기획	4.99	한진	정석물류학술재단	(주)한진칼	1.07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역사(주)	5.33	한진	정석물류학술재단	정석인하학원	10.00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제과(주)	5.70	한진	정석인하학원	(주)대한항공	2.71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지주(주)	3.25	한진	정석인하학원	(주)한진	3.97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칠성음료(주)	6.17	한진	정석인하학원	(주)한진칼	2.13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캐피탈(주)	0.48	한진	정석인하학원	한국공항(주)	0.01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푸드(주)	4.10	씨제이	(사)씨제이나눔재단	씨제이(주)	0.53
롯데	롯데문화재단	(주)코리아세븐	0.58	씨제이	(사)씨제이나눔재단	씨제이제일제당(주)	0.19
롯데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쇼핑(주)	0.15	씨제이	(재)씨제이문화재단	씨제이(주)	0.41
롯데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지주(주)	0.05	씨제이	(재)씨제이문화재단	씨제이제일제당(주)	0.0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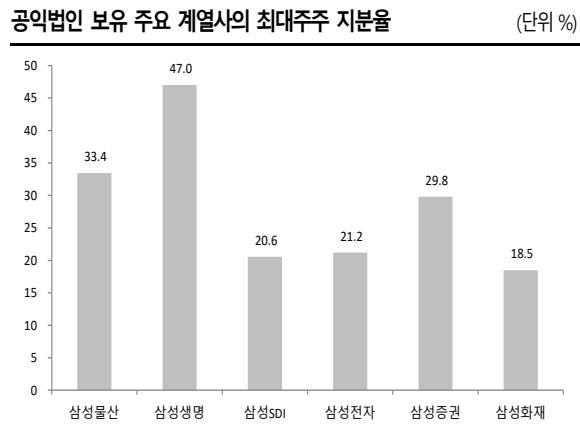
주: 2019년 5월 15일 기준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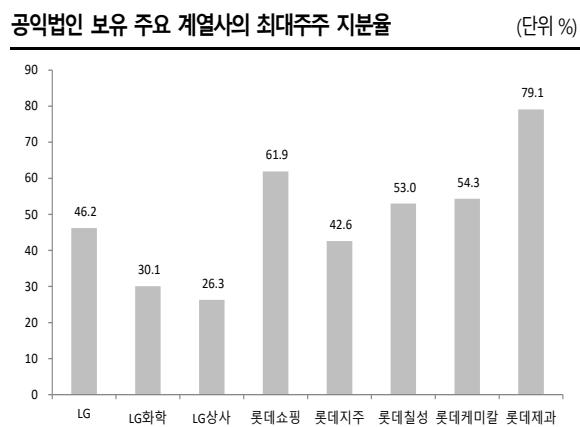
집단명	공익법인명	피출자회사명	지분율(%)	집단명	공익법인명	피출자회사명	지분율(%)
두산	(재)두산연강재단	(주)두산	7.24	에이치디씨	포니정장학재단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0.27
두산	(재)두산연강재단	(주)오리콤	0.58	SM	(재)삼리희망재단	(주)삼라	16.72
두산	(재)두산연강재단	두산건설(주)	0.03	SM	(재)삼리희망재단	동아건설산업(주)	8.71
두산	(재)두산연강재단	두산중공업(주)	0.00	세아	(재)세아이운형문화재단	(주)세아제강	2.29
두산	동대문미래재단	(주)두산	0.40	세아	(재)세아이운형문화재단	(주)세아제강지주	1.75
부영	학교법인 우정학원	(주)부영	0.79	세아	(재)세아이운형문화재단	(주)세아홀딩스	3.14
부영	학교법인 우정학원	대학도시가스(주)	5.00	세아	(재)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주)세아홀딩스	1.86
부영	학교법인 우정학원	동광주택산업(주)	1.96	세아	(재)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주)세아제강	2.71
엘에스	재단법인 송강재단	(주)엘에스	0.30	세아	(재)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주)세아제강지주	2.07
엘에스	재단법인 송강재단	(주)이원	0.80	세아	(재)세아이운형문화재단	(주)세아베스틸	0.63
대림	대림문화재단	(주)대림코퍼레이션	6.20	태광	일주세화학원	(주)티시스	3.40
대림	대림문화재단	대림씨엔에스(주)	1.41	태광	일주세화학원	(주)티알엔	1.76
대림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주)대림코퍼레이션	0.58	태광	일주세화학원	대한화섬(주)	5.00
대림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대림씨엔에스(주)	0.90	태광	일주세화학원	태광산업(주)	5.00
대림	학교법인대림학원	(주)대림코퍼레이션	2.71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주)티브로드	0.15
대림	학교법인대림학원	(주)삼호	0.78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주)티알엔	0.06
대림	학교법인대림학원	고려개발(주)	0.15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흥국생명보험(주)	4.70
대림	학교법인대림학원	대림산업(주)	1.67	이랜드	이랜드복지재단	(주)이랜드리테일	0.00
효성	동양학원	(주)효성	1.39	이랜드	이랜드복지재단	(주)이랜드월드	5.70
영풍	(재)경원문화재단	(주)영풍	0.76	이랜드	재단법인이랜드재단	(주)이랜드리테일	0.00
영풍	(재)경원문화재단	고려아연(주)	0.04	이랜드	재단법인이랜드재단	(주)이랜드월드	0.53
영풍	(재)경원문화재단	유미개발(주)	25.73	DB	DB김준기문화재단	(주)디비아이엔씨	4.30
영풍	(재)영풍문화재단	(주)영풍문고	10.00	DB	DB김준기문화재단	(주)디비저축은행	19.95
영풍	(재)영풍문화재단	서린상사(주)	5.00	DB	DB김준기문화재단	(주)디비하이텍	0.16
영풍	(재)영풍문화재단	코리아나겔(주)	5.00	DB	DB김준기문화재단	디비금융투자(주)	1.87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고속(주)	9.13	DB	DB김준기문화재단	디비손해보험(주)	5.00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산업(주)	0.02	호반건설	재단법인 태성문화재단	(주)광주방송	10.00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알(주)	100.00	호반건설	재단법인 태성문화재단	(주)호반건설	1.16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에이(주)	100.00	호반건설	재단법인 호반장학회	(주)호반건설	1.86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에프(주)	100.00	태영	(재)서암운세영재단	(주)태영건설	7.30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오(주)	100.00	동원	(재)동원육영재단	(주)동원엔터프라이즈	4.99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	금호고속(주)	6.84	한라	(주)배달학원	(주)한라	1.77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	케이아이(주)	100.00	아모레퍼시픽	재단법인 서경배과학재단	(주)아모레퍼시픽그룹	0.04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	케이지(주)	100.00	아모레퍼시픽	재단법인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주)아모레퍼시픽그룹	1.62
케이티엔지	케이티엔지 복지재단	(주)케이티엔지	2.23	아모레퍼시픽	재단법인 아모레퍼시픽재단	(주)아모레퍼시픽	1.11
케이티엔지	케이티엔지 장학재단	(주)케이티엔지	0.63	아모레퍼시픽	재단법인 아모레퍼시픽재단	(주)아모레퍼시픽그룹	0.53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코오롱글로벌(주)	0.51	삼천리	송은문화재단	(주)삼탄	6.86
코오롱	재단법인꽃과어린왕자	스위트밀(주)	19.97	삼천리	천만장학회	(주)삼탄	3.13
오씨아이	재단법인송암문화재단	오씨아이(주)	1.23	동국제강	(재)송원문화재단	동국제강(주)	0.61
오씨아이	학교법인송도학원	오씨아이(주)	0.36	하이트진로	(재)하이트문화재단	하이트진로(주)	0.03
에이치디씨	포니정장학재단	에이치디씨(주)	0.14	하이트진로	(재)하이트문화재단	하이트진로홀딩스(주)	4.9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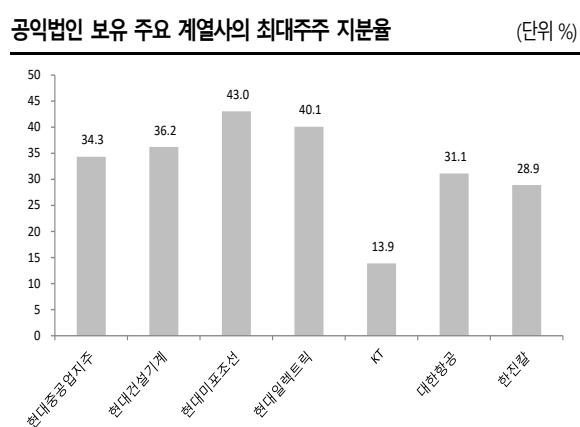
주: 2019년 5월 15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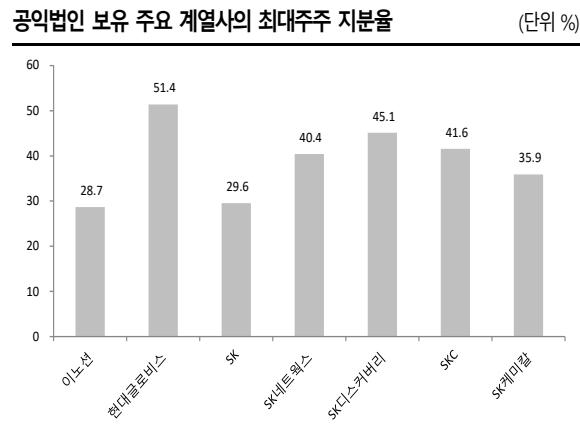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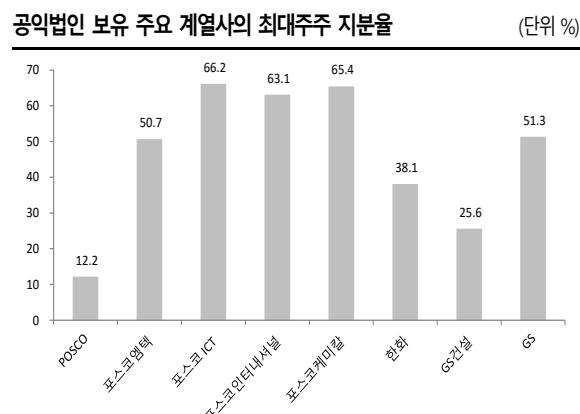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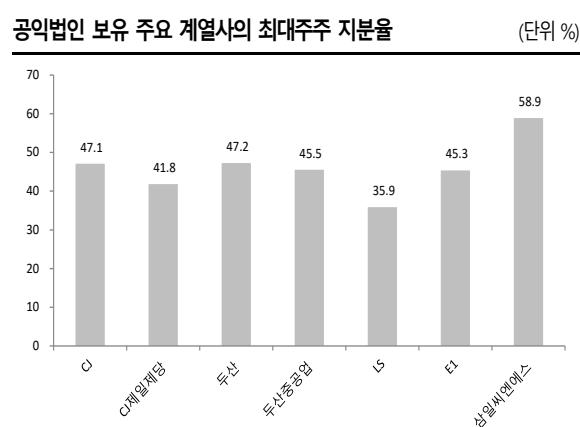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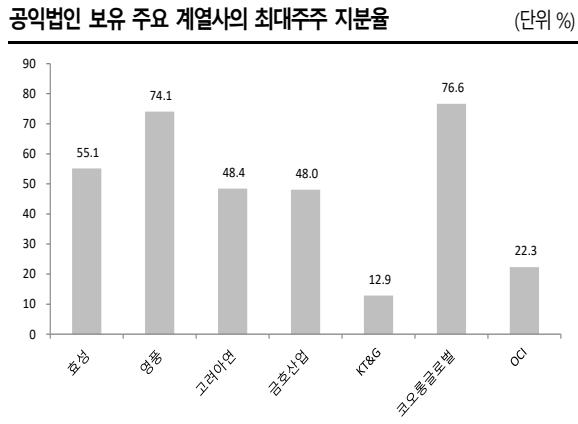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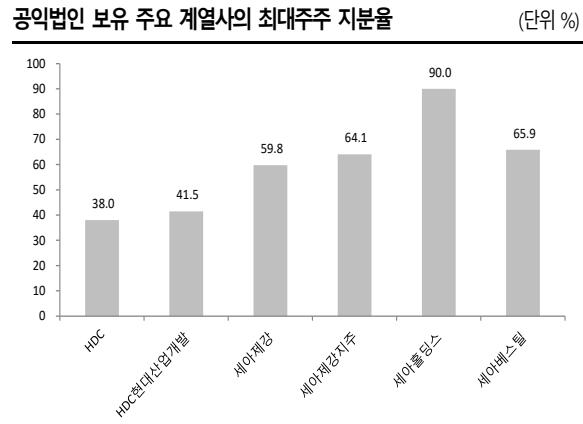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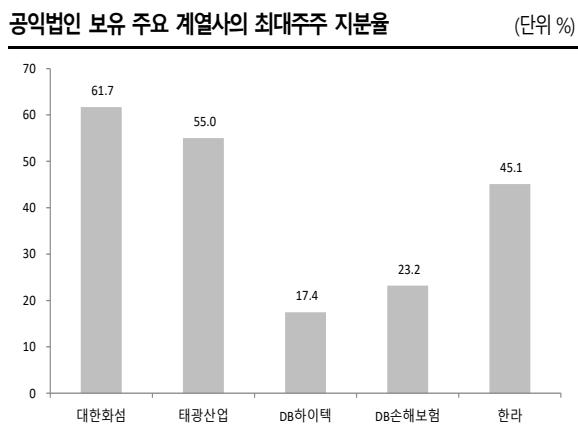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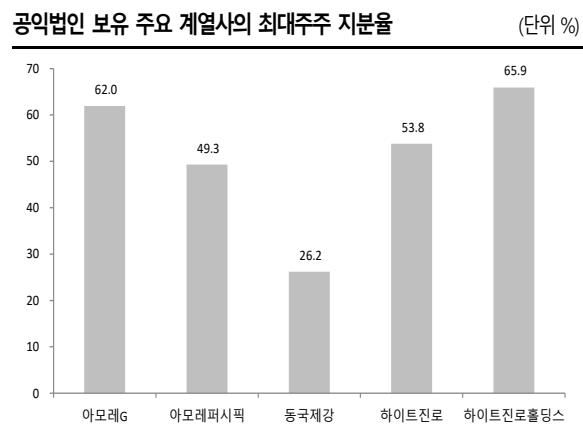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주: 최대주주 지분율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공익법인 지분율 포함.  
2020년 6월말 기준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주: 최대주주 지분율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공익법인 지분율 포함.  
2020년 6월말 기준

공정거래법 11 조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비금융 계열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1)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2)정관의 변경, 합병 3)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 등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이내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도 현행과 같은 예외는 유지하나, 합병이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 상 대방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공익법인과 같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의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에스원, 호텔신라,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등 6 개사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 등 6 개 계열사가

계열사와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 시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의 변경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데, 6 개사 모두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5%를 초과해 금융보험사 지분율 제한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삼성화재 보유 상장 계열사 주식		(단위: 주, %)
상장 계열사	주식수	지분율
삼성전자	88,802,052	1.49
삼성엔지니어링	435,000	0.22
에스원	367,933	0.97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주: 2020년 6월말 기준

삼성생명 보유 상장 계열사 주식		(단위: 주, %)
상장 계열사	주식수	지분율
삼성전자	508,157,148	8.51
삼성중공업	19,309,062	3.06
에스원	2,030,476	5.34
호텔신라	2,865,158	7.3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주: 2020년 6월말 기준

삼성증권 보유 상장 계열사 주식		(단위: 주, %)
상장 계열사	주식수	지분율
에스원	501,506	1.32
호텔신라	1,200,000	3.06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주: 2020년 6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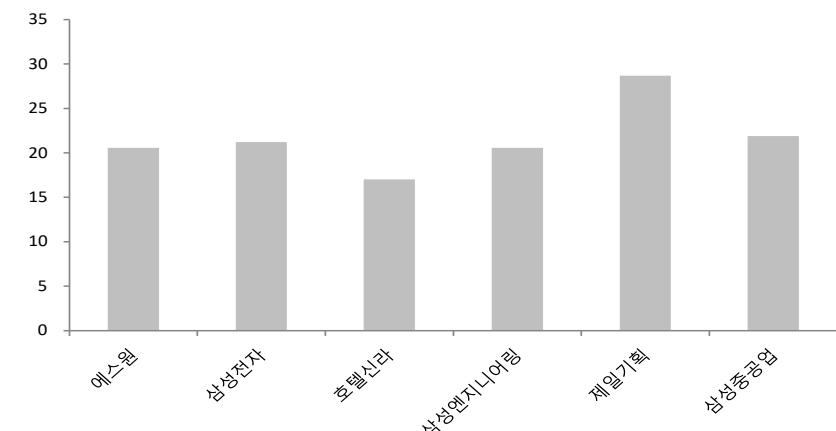
삼성화재 보유 상장 계열사 주식		(단위: 주, %)
상장 계열사	주식수	지분율
에스원	725,060	1.91
제일기획	3,500,000	3.04
호텔신라	524,863	1.34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주: 2020년 6월말 기준

삼성그룹 금융보험사 보유 상장 계열사 주식		(단위: 주, %)
상장 계열사	주식수	지분율
삼성전자	596,959,200	10.00
삼성중공업	19,309,062	3.06
에스원	3,624,975	9.54
호텔신라	4,590,021	11.70
삼성엔지니어링	435,000	0.22
제일기획	3,500,000	3.04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주: 2020년 6월말 기준

#### 삼성 금융보험 계열사 보유 계열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단위: %)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마.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안 제 24 조제 2 항 및 제 28 조)

-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 3)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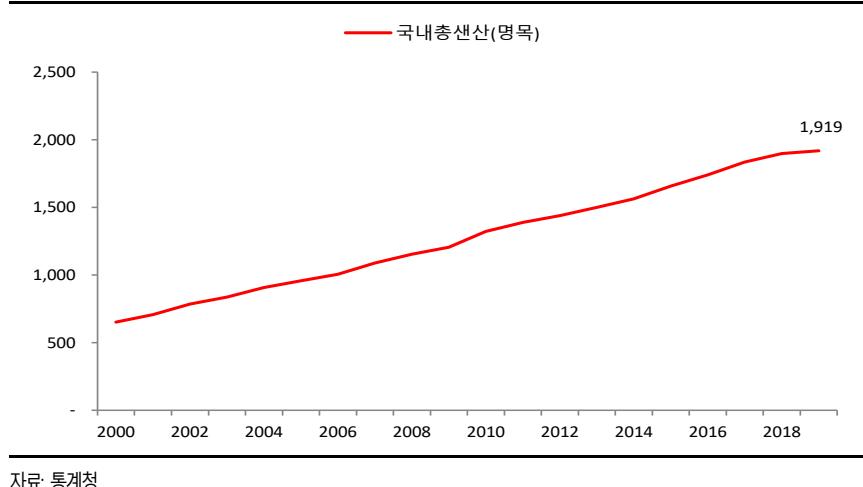
##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현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10 조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 이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이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국내 총생산액의 0.5%로 변경한다. 다만 이 지정기준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 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연도부터 적용하게 한다.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액은 1,919 조원이다. 현재 국내총생산액이 2 천조원에 미치지 않아 2 천조원이 되는 시점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현행과 유사할 전망이다. 2 천조원을 초과할 경우 자산지정 기준은 10 조원을 넘어서겠으나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가 금지되며, 채무보증(충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개인이나 범인이 차입을 할 때에 신용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해 주는 행위)이 제한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국내총생산액 추이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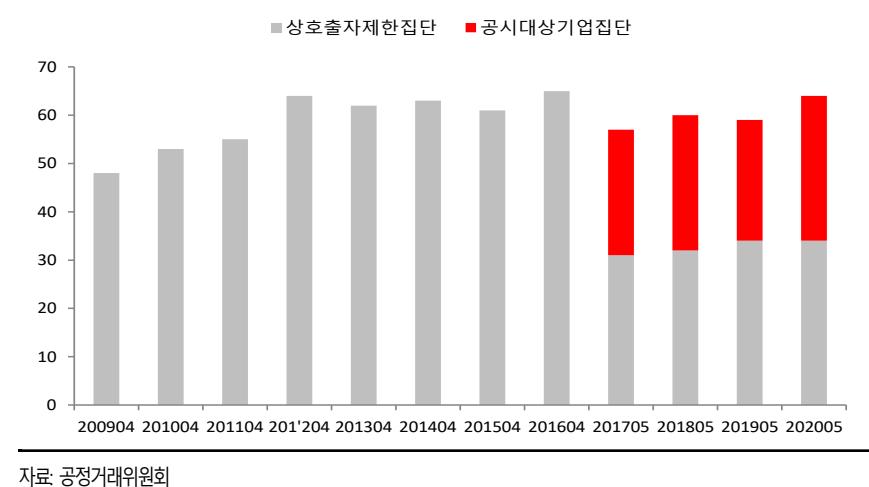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단위: 개, 십억원)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회사수	자산총액
삼성	이재용	59	424,848
현대자동차	정몽구	54	234,706
에스케이	최태원	125	225,526
엘지	구광모	70	136,967
롯데	신동빈	86	121,524
포스코	(주)포스코	35	80,340
한화	김승연	86	71,686
지에스	허창수	69	66,753
현대중공업	정몽준	30	62,863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8	60,596
신세계	이명희	41	44,088
케이티	(주)케이티	44	36,315
씨제이	이재현	77	34,537
한진	조원태	31	33,549
두산	박정원	25	29,251
엘에스	구자홍	54	23,717
부영	이종근	23	23,284
대림	이준용	32	18,695
미래에셋	박현주	38	18,554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27	17,579
에쓰-오일	에쓰-오일(주)	3	16,727
현대백화점	정지선	25	16,027
카카오	김범수	97	14,243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28	14,001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3	13,580
효성	조석래	54	13,472
하림	김홍국	52	12,478
영풍	장형진	26	12,445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주)	5	12,320
케이티엔지	(주)케이티엔지	10	11,715
에이치디씨	정몽규	27	11,708
케이씨씨	정몽진	16	10,977
코오롱	이웅열	37	10,428
대우건설	(주)대우건설	16	10,21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국내 기업집단 지정 추이

(단위: 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 제30조 및 부칙 제4조)

-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 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의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 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 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 (7)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경쟁사업자 사이의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하여 이를 제한한다.

### 사.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안 제39조)

-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 (8)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정한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상장사와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수의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회사까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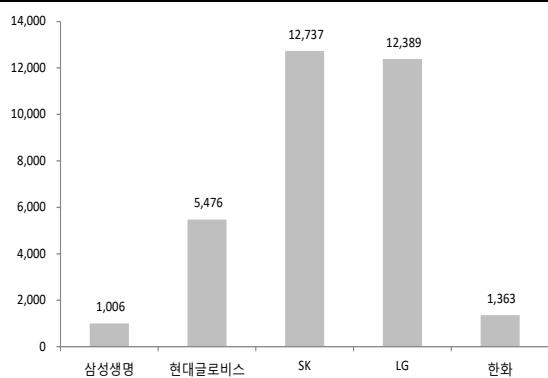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2020년 5월 1일 기준 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은 210개 회사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 기업은 598개로 증가하게 된다.

신규로 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각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에 근접한 회사의 경우 일부 지분 매각만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익편취 규제는 계열사간 거래가 200 억원 이상이거나,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일 경우 혹은 정상거래와 거래조건이 7% 이상 차이가 날 때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로 규제대상이 된 기업이 모두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규 사외편취 규제대상			(단위: %)
기업집단	개수	회사명	총수일가 지분율
삼성	1	삼성생명	20.8
현대차	1	현대글로비스	29.9
SK	1	SK	28.6
LG	1	LG	29.1
한화	1	한화	26.8
GS	1	GS건설	24.1
신세계	2	신세계	28.6
		이마트	28.6
한진	1	한진칼	25.3
LS	2	LS	27.3
		예스코홀딩스	27.1
효성	4	효성중공업	22
		효성첨단소재	23
		효성티앤씨	24
		효성화학	24
하림	1	하림지주	25.7
영풍	1	영풍정밀	21.3
HDC	1	HDC아이콘트롤스	28.9
KCC	2	KCC건설	30
		코리아오토글라스	29.9
OCI	2	유니드	21.1
		OCI	20.2
태영	1	태영건설	29.8
넷마블	1	넷마블	24.2
태광	1	대한화섬	23.2
한라	1	한라홀딩스	24.3
동국제강	1	동국제강	25.1
금호석유화학	1	금호석유화학	22.6
하이트진로	1	하이트진로홀딩스	29
KG	1	케이지케미칼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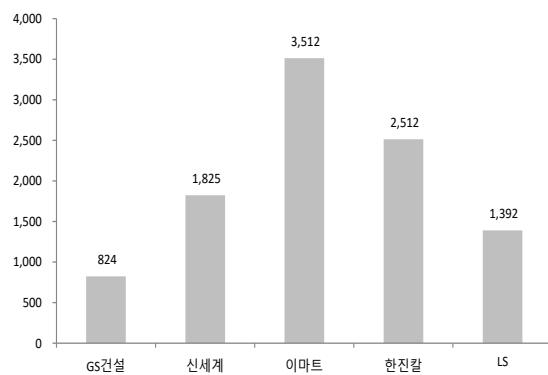
자료: 경제개혁연구소

주: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30% 미만 직접 보유 상장회사

**사이펀처 대상 제외를 위해 매각 시 매각금액**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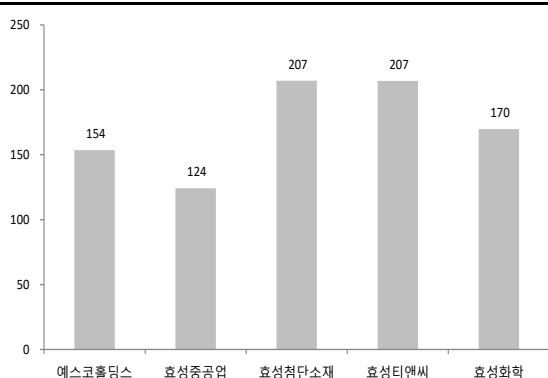
자료: Quantewise

주: 2020년 9월 18일 종가 기준

**사이펀처 대상 제외를 위해 매각 시 매각금액**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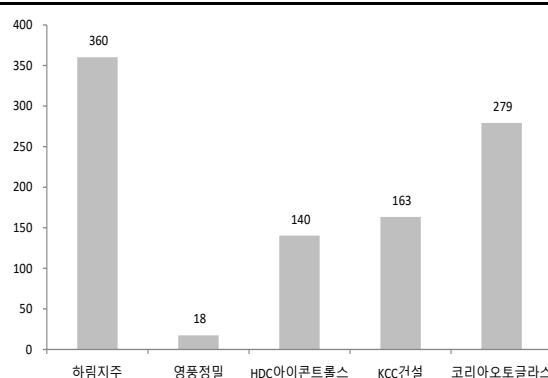
자료: Quantewise

주: 2020년 9월 18일 종가 기준

**사이펀처 대상 제외를 위해 매각 시 매각금액**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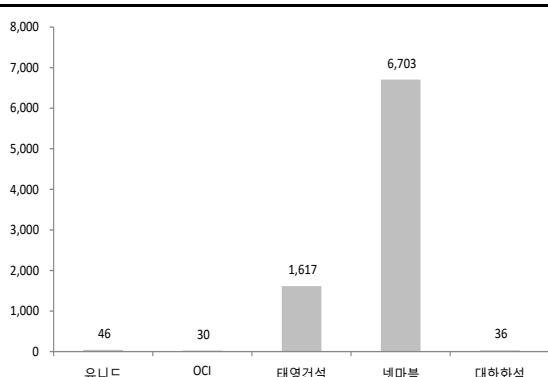
자료: Quantewise

주: 2020년 9월 18일 종가 기준

**사이펀처 대상 제외를 위해 매각 시 매각금액**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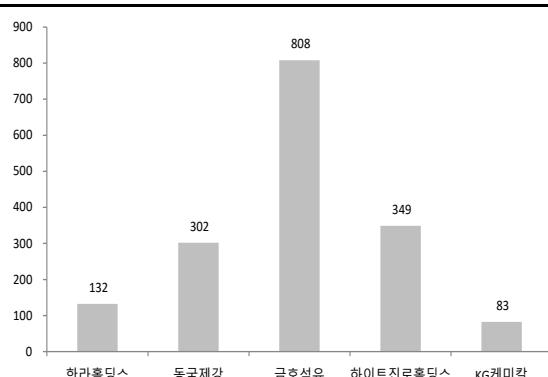
자료: Quantewise

주: 2020년 9월 18일 종가 기준

**사이펀처 대상 제외를 위해 매각 시 매각금액** (단위 억원)

자료: Quantewise

주: 2020년 9월 18일 종가 기준

**사이펀처 대상 제외를 위해 매각 시 매각금액** (단위 억원)

자료: Quantewise

주: 2020년 9월 18일 종가 기준

아.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안 제 46 조)

-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균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 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 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 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 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 (9)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에 대해 금지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사건의 장기화 등의 경우 신속한 피해주체가 어렵다. 이에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할 수 있게 하였으며 법원은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의 신청이나 직원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안 제 107 조)

-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 (10)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 시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와 동영상 등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제재가 미약해 피해자의 손해 입증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안 제 110 조)

-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 · 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 (11) 전속고발제 개편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검찰의 강제수사력을 활용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공동행위(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속고발제의 폐지로 공정거래법은 더욱 엄격하게 집행될 것이다.

### 카. 전속고발제 개편(안 제 119 조 및 제 129 조제 1 항)

- 1)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쟁제한의 폐해가 커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2) 검찰의 강제수사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중대 · 명백한 공동행위(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 간에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12) 형벌규정 정비

그 동안 형벌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 타. 형벌규정 정비(안 제124 조 및 제125 조)

-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 2. 상법

정부에서 제출한 이번 상법 일부 개정안은 모회사 대주주의 자회사 자산 및 사업기회를 유용방지 및 독립성 보장, 소주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의 분리선출제를 큰 틀로 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 형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감사위원회의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위원에 대한 대주주 등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감사위원회의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신주의 이익배당 기준일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한 규정을 정비하여 신주의 발행일에 상관없이 이익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 배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감사 등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며,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에 대한 특례 규정이 일 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 다중대표소송제

현행법상 특정회사의 주주가 해당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주주 대표소송만 가능하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 일본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미국의 경우에도 판례상 일본과 같이 지분율 100%일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회사 지분 50% 초과 시 다중대표소송제가 가능하다.

제406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6 조의 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 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 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 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 항 및 제2 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 조제3항·제4항, 제403 조제2항, 같은 조 제4 항부터 제6 항까지 및 제404 조부터 제406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 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1 항 및 제2 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 항 및 제2 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2)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는 선출단계부터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과정에서 지배주주들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선출된 감사위원은 이사회 멤버이다. 따라서 기업의 주요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사회 결의 요건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이다. 주요 이사회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채의 발생, 주식양도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 ② 자기주식의 처분, 자기주식의 소각
- ③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임
- ④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 ⑤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 ⑥ 주주총회 소집권,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 ⑦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승인, 이사의 경업 거래 승인
- ⑧ 재무제표의 승인, 영업보고서의 승인
- ⑨ 중간배당
- ⑩ 간이 합병, 소규모 합병의 합병계약서 승인
- ⑪ 간이 주식 교환, 소규모 주식 교환

현행법상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보유하고 있는 지분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해 분리선출 되는 이사는 3% 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3%를 적용으로 인해 투기자본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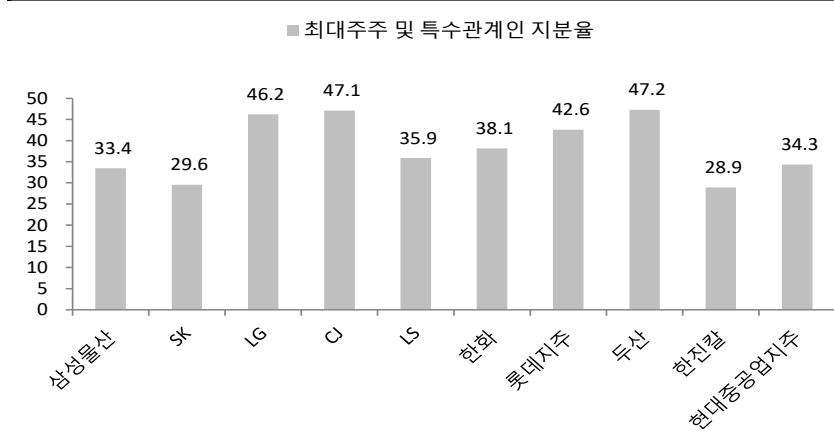
국내 주요 지주회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단위: 명)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사내이사	사외이사	합계	
삼성물산	4	5	9	3
SK	4	5	9	3
LG	3	4	7	3
CJ	3	4	7	4
LS	3	3	6	2
한화	4	5	9	3
롯데지주	4	5	9	3
두산	3	4	7	4
한진칼	3	8	11	3
현대중공업지주	2	3	5	3

자료 각 사

주: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 2020년 2분기말 기준

국내 주요 지주회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단위: %)



자료 각 사

주: 2020년 2분기말 기준

제 542 조의 12 제 3 항 및 제 4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 7 항 및 제 8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 1 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④ 제 1 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국내 기업집단 주총 의결권관련 제도현황 1

(단위: 개)

기업집단명	상장회사수	집중투표제	도입회사수	서면투표제	도입회사수	전자투표제	도입회사수
DB	4	0	0	0	3		
SM	3	0	0	0	1		
교보생명보험	1	0	0	0	1		
금호석유화학	1	0	0	0	0		
금호아시아나	4	0	0	0	1		
네이버	1	0	0	0	0		
넥슨	1	0	1	0	0		
넷마블	1	0	0	0	0		
대림	4	0	0	0	0		
대우건설	1	0	0	0	1		
대우조선해양	1	1	0	0	0		
동국제강	2	0	0	0	0		
동원	3	0	0	0	0		
두산	6	0	5	0	3		
롯데	11	0	0	0	2		
미래에셋	3	0	0	0	3		
삼성	16	0	0	0	0		
삼천리	1	0	0	0	0		
세아	5	0	0	0	0		
셀트리온	3	0	0	0	1		
신세계	7	1	0	0	7		
씨제이	9	1	1	1	5		
아모레퍼시픽	2	0	0	0	0		
에스케이	18	1	0	0	12		
에쓰-오일	1	0	0	0	0		
에이치디씨	4	0	0	0	0		
엘에스	7	0	1	1	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기업집단 주총 의결권관련 제도현황 2						(단위: 개)	
기업집단명	상장회사수	집중투표제	도입회사수	서면투표제	도입회사수	전자투표제	도입회사수
엘지	12	0	0	0	1		
영풍	6	0	0	0	1		
오씨아이	4	0	1	1	0		
유진	4	0	1	1	2		
이랜드	2	0	1	1	1		
지에스	6	0	0	0	0		
카카오	1	0	0	0	1		
케이씨씨	3	0	1	1	0		
케이티	9	1	1	1	6		
케이티앤지	2	1	0	0	1		
코오롱	6	1	2	1	1		
태광	3	0	0	0	1		
태영	4	2	0	0	1		
포스코	6	1	1	1	4		
하림	6	0	0	0	6		
하이트진로	2	0	0	0	0		
한국타이어	3	0	1	1	0		
한국투자금융	1	0	1	1	0		
한라	3	0	0	0	0		
한진	5	0	0	0	0		
한화	7	1	2	2	7		
현대백화점	7	0	0	0	7		
현대자동차	12	0	1	1	3		
현대중공업	5	0	0	0	0		
호반건설	1	0	0	0	0		
효성	10	0	0	0	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3)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정

현재 기업의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익배당 기준일과 영업연도말이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한 상법 규정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관행적으로 정관에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로 규정해 왔고 이런 기준일의 효력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3 월말까지 정기주주총회가 집중되어 개최되어 왔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 이외의 날짜로 자유롭게 정해 4 월 이후에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유지하도록 하였다. 기업들은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 이외의 날짜로 변경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시기가 분산될 전망이다.

### (4)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정비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과 관련한 특례를 인정하여 6 개월의 보유기간을 두는 대신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회사에 비해 완화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비상장회사에 대한 6 개월 지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주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의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가 비상장회사의 일반지분요건을 충족한 경우 6 개월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소주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3.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둘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자산규모 5 조원 이상)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하여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와 위험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내에 사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하게 된다. 대표금융회사는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 수립, 금융그룹 내 내부통제기준 제정·개정 및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업무, 금융그룹 위험관리정책 수립,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이 법안의 통과로 복합금융그룹인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에 적용될 전망이다.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지분구조		(단위: %)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생명	심상지신운용	삼성증권	삼성카드	계열사	보유	지분	합계	
삼성화재해상보험								15.96	14.98						30.94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100							100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100							100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100							100	
삼성생명보험	19.34							10.21							29.55	
삼성선물										100					100	
삼성자산운용								100							100	
삼성액티브자산운용									100						100	
삼성해지자산운용									100						100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99.78							99.78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100						100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100						100	
삼성증권										29.39					29.39	
삼성카드										71.86					79.76	
삼성카드고객서비스											100				100	
삼성벤처투자	16.67	16.33	16.33	17	17						16.67				100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주: 2020년 8월말 기준, 보통주 기준

## 한화그룹 금융계열사 지분구조

(단위: %)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한화 갤러리아	한화 타임월드	한화 글로벌에셋	한화건설	한화호텔 앤드리조트	에이치 솔루션	한화 테크엠	한화 생명보험	한화 자산운용	한화 손해보험	한화 투자증권	계열사 보유	지분 합계
한화저축은행			36.05	38.14	16.16	9.65								100
한화생명보험	18.15		1.75		25.09				13.49					58.48
한화손해사정									100					100
한화라이프에셋									100					100
한화자산운용									100					100
한화손해보험									51.36					51.36
한화금융에셋									100					100
한화투자증권	1.41	3.86	12.46		8.72				19.63		0.32			46.4
에이치글로벌파트너스							100							100
캐롯손해보험									68.34					68.34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주: 2020년 8월말 기준. 보통주 기준

## 현대차그룹 금융계열사 지분구조

(단위: %)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카드	현대커мер셜	계열사 보유	지분 합계
현대캐피탈	59.68		20.1					79.78
현대카드	36.96		11.48			24.54		72.98
현대커머셜	37.5							37.5
현대차증권	27.49		4.9	16.99				49.38
블루월넛					100			100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주: 2020년 8월말 기준. 보통주 기준

## DB 그룹 금융계열사 지분구조

(단위: %)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DB하이텍	DB저축은행	DB금융투자	DB손해보험	DB엠앤에스	계열사 보유	지분 합계
DB저축은행		1.15		49.98				51.13
DB금융서비스						100		100
DB금융투자				2.4	25.08			27.48
DB생명보험					99.83			99.83
DB손해보험					15.19			15.19
DB씨앤팟스자동차손해사정					100			100
DB씨에스아이손해사정					100			100
DB씨에이에스손해사정					100			100
DB엠앤에스					100			100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100			100
DB자산운용				55.33				55.33
DB캐피탈		3.22			87.11			90.33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주: 2020년 8월말 기준. 보통주 기준

현행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루어지는 금융업권별 감독만으로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 간의 내부거래나 출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경영상 위험에 관한 사항까지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둘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하여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